

운영규정 개요

I. 기본정보

기 관 명	안양가연요양원	설치일자	2019. 04.01
급여종류	시설급여 (노인의료장기요양시설)	입소정원	49명
대 표 자	라옥화	협력의료	메트로병원, 선진병원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72. 2층(미래앰피아201~207호, 209호)		
시설규모	면적 1,281.28㎡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보 호사	자원봉 사자	의료 간호	물리(작업)	프로 그램	식당/ 조리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시설	17	1	2	○	○	○	○	○	3	○	○

II.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 정원 : 49명
2. 이용 대상 :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및 기관 홈페이지,기관 블로그, 지인 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III.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시설물 사용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한다.
시설급여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의료서비스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
특별보호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 목적 및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 - 입소자 건강 증진, 생활 안정, 가족 부담 경감 목적	
2.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	- 정원: 49명 - 대상: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 필요 노인 - 모집: 홈페이지, 홍보자료, 협약병원 등	
3. 입소 계약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계약기간 장기요양보험유효기간까지, 등급 변동 시 재계약 - 비대상자: 협의로 계약기간 결정 - 종료일 미기재 시 유효	
4. 신원인수인 권리·의무	권리: 상태 보고, 서비스 건의, 의료·전원 결정 참여 의무: 금전 의무 공동 부담, 규정 준수, 긴급 대응, 무단외출 책임	
5. 의료서비스 및 응급대응	- 간호(조무)사: 건강 점검·기록, 의사 지시 이행, 응급 시 협약의사 상담 - 협약 의료기관: 월 2회 방문진료, 처방·조치, 치료비 본인 부담 - 병원 진료: 보호자 동행 원칙, 불가 시 직원 동행(비용 본인 부담) - 전원: 질환 악화·요청 시 협의 후 조치 - 응급: 주치의 연락, 관리자 보고	
6. 시설물 사용	- 본래 용도 사용 원칙 - 파손·열실 시 원상회복 또는 잔존가치 기준 실비 청구	
7. 배상책임 및 면책	- 배상: 종사자 고의·중과실, 약물 오투약, 상한 음식 제공 - 면책: 자연사, 임의 외출 사고, 천재지변, 본인 고의·과실	
8.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지원: 식사, 배설, 목욕, 위생,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 인지·향상 기능훈련 및 여가 프로그램 - 의사소통·여가: 편의대행, 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건강지원·응급: 건강관찰, 투약, 치매관리, 간호·처치, 호스피스, 예방관리 - 재활: ADL 훈련, 물리·작업치료, 신체기능훈련, 인지·정신기능훈련	
9. 비용 부담	-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 선납 원칙 - 납부: 입소시 7일 내, 이후 매월 10일까지 - 중도퇴소 시 일할 계산 후 정산 - 개인 물품, 외부 서비스 비용 별도	
비 급 여 항 목 (2025년)	식사재료비	3,600 원 (1식), 간식1,600원/1일
	상급침실 비용	1인실 5,000원 , 2인실 4,000원 (1박 기준)
	이미용서비스	무료(자원봉사 서비스)